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1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반복 규정하지 않도록 삭제함으로써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수정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사항의 조례규정 삭제 ※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훈단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훈단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 독립</p> <p>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p> <p>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p> <p>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p> <p>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제2조(보훈단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훈단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p>

4. "보훈단체"란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
연 락 처	(033)330-2150

관계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